

인격모독의 악순환, ‘중북좌빨’과 ‘수구꼴통’

– 서울고등법원 2014나52652 판결

조원철

변호사

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중북좌빨’

‘수구꼴통’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뇌 구조도를 그리듯 그릴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중북좌빨’과 ‘수구꼴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신문과 방송에서 이러한 류의 표현들을 참 많이 보고 들어 왔다.

‘중북(從北)’이란 북한의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 등 유일수령과 그 이념, 특히 주체사상과 노선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좌익 빨갱이’의 줄임말인 ‘좌빨’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좌익세력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반면 ‘수구(守舊)’란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고 구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꼴통’이라는 모멸적인 용어와 합체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인격모독적인 표현들이 언론과 인터넷상에 난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들도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 언론보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전직 방송인이자 정치인인 원고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북 성향이라고 비난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전직 기자인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원고를 ‘듣보잡 극우’라고 표현하였다. 원고는 대통령 방미기간 중 발생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신고된 내용만으로는 혼방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소송변호사의 말이 있다. 그럴 수 없다면 조용히 수사 결과를 지켜볼 때가 됐다”고 해당 대변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글에서 이 점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블로그 글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참고로, 원고가 중북 성향이라고 비난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하였다.

공개적으로 사실을 거론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먼저, 법원은 ‘극우(極右)’란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내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듣보잡’이라는 신조어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뉘앙스가 강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통령 방미기간 중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성추행 ○○○을 미친 듯 옹호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피고의 글 중 ‘원고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도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조차 못하는 인격장애적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표현은 글의 맥락상 불필요한 것으로서 오로지 원고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따라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성추행 피해여성에 대한 사과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몰아내야 할 자들은 종북세력이다”라고 답변하였다’는 피고의 글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명예

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대선 때마다 당적을 버리며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피고의 글은 정치인으로 공적 존재인 원고의 정치적 행보 및 성향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원고가 대선 때마다 당적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여러 정당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점은 인정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살살이 찾아내어 빠짐없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듯 원고가 그간 무수히 쏟아낸 광기의 언어, 매카시즘적 선동글은 다 꺾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런 그녀의 행위를 지적한 누리꾼들을 몽땅 중복세력이라며 매도하고 더 나아가 모조리 고소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피고의 글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의견 내지 논평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

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중복좌빨’과 ‘수구꼴통’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모두 듣보잡 극우나 중복세력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각기 한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중복좌빨’이나 ‘수구꼴통’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고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하한다. 남을 비하할 때 자신 또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 안에서 우주를 발견할 때 내 속의 우주도 발견할 수 있다. ☞

